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02
----------	------

제안년월일 : 2021년 12월 21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2022년 1월 13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는바, 의회 청인과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 등은 청인을 두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추가함(안 제2조,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 ②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제2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를 “제3항제2호의 직인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장
2. 서울특별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4.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제4조 중 “의장·특별위원장, 사무처장”을 “청인 및 의장·서울특별시의회특

별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상임위원장”을 “서울특별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 “각각 비치하고”를 “비치하고”로 한다.

제7조 중 “기관장”을 “기관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하며”를 “따라”로 한다.

별표에 직인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	2.7
--------------------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서울특별시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회 특별위원회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p> <p><신 설></p> <p>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장 2.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p>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p> <p>②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p> <p>③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회회의장 2. 서울특별시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회특별위원회위원

3. 사무처장

<신 설>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의장·특별위원장, 사무처장의 공인은 의정담당관실에, 상임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 부서의 장(각 위원회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인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

제7조 (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장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4.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④ 제2항과 제3항-----
-----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⑤ 제3항제2호의 직인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 -----
-----.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관리자) 청인 및 의장·서울특별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 비치하고-----.

제7조 (찍는 위치) ----- 기관명 -----

-----.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① 공인을 등록하려는 공인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사무처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별표]

공인의 규격(제5조 관련)

(단위 : cm)

구분		길이
청인	○ 합의제 기관, 자문기관 등	3.6
직인	○ 서울특별시회의회의장인	3.0
	○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2.7
	특별위원회위원장인	2.7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인	2.7
	<u><신설></u>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① -----

----- 따라 -----

-----.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공인의 규격(제5조 관련)

(단위 : cm)

구분		길이
청인	○ 합의제 기관, 자문기관 등	3.6
직인	○ 서울특별시회의회의장인	3.0
	○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2.7
	특별위원회위원장인	2.7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인	2.7
	○ <u>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u>	<u>2.7</u>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